

[] 저당권
[]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채무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채권액 또는 채권의 최고액		원정					
등록원인에 정한 사항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		
	이자발생일		년		월	일	
	이자지급일		매월		일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그 밖의 채권의 종류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제53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2.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14,400원	
※ 유의사항: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